**<공범>**

* 공동정범 :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 하 실행분담
* 공동 : 수인 동일 장소, 기회에 상호범행 인식 이용 범행
* 합동 : 공모, 시간장소적 협동관계 하 실행분담
* 공모관계 이탈 :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해도, 주도적 공모자는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한 이탈 인정 안됨

**<흉기 등>**

* 흉기: 본래 살상∙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성 있는 것. 위험한 물건과 구분됨
* 위험한 물건 : 사회통념상 상대방∙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 느낄 수 있는 물건
* 휴대 :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널리 이용하는 것
* 손괴: 물리적 훼손하여 효용 해하는 것

**<생명과 신체에 관한죄>**

* 상해 : 신체의 완전성 손상뿐 아니라 생리적 기능 훼손 포함 (포섭 - 건강상태 불량하게 변경, 생활기능에 장애 초래)
*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치, 난치의 질병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직무 자체가 위험성 가져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 및 사람 생명신체 위험 방지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

**<유기 학대>**

**유기**

* 주체 :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자, 사회상규상 보호책임은 불포함
* 계약상 의무 : 주된 급부의무에 한정되지 않고,계약 해석상 주의배려할 부수적 의무도 포함
* 사실혼 : 사실혼관계도 민법 규정 취지 등 비추어 법률상보호의무 있음.

단순한 동거, 간헐적 정교관계 맺는다는 사정으로 부족, ① 주관적 혼인의사 있고 ②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 요함.

* 요부조자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극복 불가한 자
* 유기 : 요부조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 발생키는 것

**학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사람을 학대 요함

* 주체 :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
* 학대 :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 하는 행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자유에 관한 죄>**

**<협박>**

* 해악의 고지 : 일반적으로 공포심 느낄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 / (폭언과 구분 필요한 경우)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 행위 외형, 경위 등 종합해 판단. / 해악고지 방법은 제한 없다. 거동 /묵시적으로 가능
*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 : 제3자와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해자가 공포심 느낄 정도이면 협박 성립. 이때 제3자는 법인 포함.
* 제3자에 의한 해악의 고지 :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믿게할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했다면 협박 성립 무방
* 고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 인식하면 되고, 해악 실제 실현할 의도 불요
* 기수 : 해악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 일으켰는지 불문하고 협박 기수 (위험범)

**<체포 감금> 존속, 특수, 상습, 치사상 有**

* **체포**: 신체에 대한 직접, 현실적 구속을 가해 신체활동의 자유 박탈하는 것. 수단방법 불문
* 실행의 착수 :체포의 고의로써 신체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개시시 착수
* 기수 : 계속범으로, 신체 자유 구속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 **감금** : 일정한 장소 밖으로 못 나가게 해 신체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행동 자유의 박탈 전면적일 것 불요,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 자유 허용되어도 감금

* 체포 감금 수단방법 : 제한 없음. 유무형, 작위부작위, 심리적 장애 불문.
* 기수 : 계속범으로, 신체 자유 구속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 죄수 : 감금이 강도/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별죄 구성, 상상적 경합 관계

감금행위가 단순히 범행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범행 끝난 뒤에도 계속되면 실체적 경합

**중체포 중감금**

*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면 성립
* 가혹행위 : 사람에게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

* 약취 : 폭행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생활관계,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이전
* 유인 : 기망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생활관계,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이전
* 보호법익 : 미성년자의 자유,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 고의 :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으로 족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인식 불요
* 폭행 협박 :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 반항 억압 정도 불요.
* 유혹 :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감언이설로서 상대방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 허위일 것불요
* 사실적 지배 :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
* 실행의 착수 : 약취유인의 수단인 폭행협박기망유혹 개시한 때
* 기수 : 계속범으로 피약취자를 실력적 지배하 두고 시간적 계속성 인정될 때

**<명예에 관한 죄>**

**<모욕, 명예훼손>**

* **명예훼손** :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 **모욕** : 사실적시 아닌,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표시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
* (객체) 집합명칭 :집합적 명사 쓴 경우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면 불성립.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한사람에게 말한 경우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 사실: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진술 / 장래의 일이어도 과거.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 포함하면 사실 /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어야 사실적시
* 허위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 / 세부적 사실에 약간 차이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한 것은 불포함
* 특정 :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인정

**310조**

* 공공의 이익 : 널리 국가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포함 / 공인인지 여부, 공적 관심 사안에관한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 고려해 판단
* 진실성 착오한 때 310조 적용 :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면 위법성 없음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 : 공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는바, 공익을 위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비방목적 부정됨.
* 출판물 :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그 정도의 효용과 기능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
* 범행종료시기 :게시행위로써 범행은 종료, 출판물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계속되는 것 아님.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신용훼손**

* 신용 : 사람의 지불능력,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 허위사실 :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과거∙현재의 사실 유포,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 불포함
* 유포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 소수에게 말한 경우도 전파될 것 예상했으면 유포
* 위계 :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 일으켜 이용하는 것
* 기수 :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 발생시키면 성립 (추상적 위험범)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 업무방해

* 업무 : 직업.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적 종사 사무

<->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하는 사무는 불포함

* 업무의 보호가치 :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면 보호가치 있음. 기초가 된 계약 등 반드시 적법할 것 불요

<->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 있으면 보호대상 아님

* 일회적인 사무 : 어느정도 계속성 있고,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이면 업무
* 위계 : 부지 ∙ 착오 일으켜 이를 이용해 목적 달성
* 위력 : 자유의사 제압∙혼란케할 일체의 세력으로 / 폭력협박,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권세 등 유무형 불문
* 위력의 상대방 : 일정한 물적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수행 곤란케하는 행위도 포함됨 / 상대방이 제3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성립.
* 업무방해 : 업무 집행 자체 방해는 물론, 경영 저해,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방해 포함.
* 심사 업무 :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갖춘 경우에 한해 수용 여부 결정하는 업무는, 신청서 사유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 판단하는 것인바, 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 파업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손해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 제압 혼란될 수 있는 경우여야 위력임.
* 기수 :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미수 처벌 X)

* 손괴 :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멸실 /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
*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의 입력 :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정보 입력 / 정보처리장치 운영하는 본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의 입력
* 기수 : 업무방해 결과 초래할 위험 발생시 기수, 업무방해 결과 발생 불요 (추상적 위험범) 정보처리에 장애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은 요함

**경매방해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 경매 :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구두로 청약을 받아 최고가격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매매
* 입찰 : 다수인에게 문서로 계약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 공정을 해함: 가격결정 뿐만 아니라, 적법 공정한 경쟁방법 해하는 행위 포함
* 담합 : 참가자 상호간 통모로 특정인을 경락/낙찰자로 하기 위해 그 이외의 자는 일정 가격범위 밖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 협정하는 것
* 기수 : 입찰의 공정 해할 행위를 하면 기수, 현실적으로 해한 결과 발생 불요 (추상적 위험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편지,문서,도화)개봉/(편지,문서,도화,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 친고죄임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개봉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냄
* 봉함 기타 비밀장치 : 외부포장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

**업무상비밀누설**

\* 친고죄임

* 객체 :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
* 누설 :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비밀을 고지하는 것
* 기수 : 비밀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기수. 상대방 현실적 인식 불요 (추상적 위험범)

**<주거침입> - 특수, 폭처법(공동), 미수 있음**

* 보호법익 : 사실상 주거의 평온
* 침입 :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출입 목적 알았으면 승낙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인정되어도 침입 아님
* 객체 : 행위자 이외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 공동주거권자는 ①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②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등 특별한 사정없으면 임의로 출입해도 주거침입 아님.
* 주거 :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곳
* 공동주택 공용구역 : 거주자들의 감시.관리 예정되어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 보호필요성 있어 주거에 해당
* 건조물 : 지붕 기둥 주벽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기거출입 가능한 장소 /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 불요
* 위요지 : 건조물에 직접 부속해 이용에 제공되고, 담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외부인 출입 제한된 곳
* 방실 : 건물 내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구획을 말함
* 실행의 착수 : 밀거나, 당기거나, 손괴한 때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 내포하는 행위 개시시
* 기수 : 신체 일부라도 침입해서 사실상 주거 평온 해했으면 기수
* *공동주거 최판 공통 문구* : 공동주거는 그 성질에 비추어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한 것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퇴거불응**

* ①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②응하지 아니함○
* 주체: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
* 퇴거 :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O / 미수처벌X

* ①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②자기물건을 ③취거·은닉·손괴
* 취거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 이전
* 은닉 : 소재 발견 불가능, 현저 곤란케 하는 것
* 손괴 : 물리적 훼손해 효용 상실케 하는 것
* 점유 : ①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 의미하는 것 아니고, ②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③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④동시이행항변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 법정절차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
* 타인의 권리 : 타인의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반드시 제한물권 의미하는 것 아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
* 기수 : 권리행사 방해 될 우려로 족함 (추상적 위험범)

**강제집행면탈**

* ①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②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③채권자를 해함
* 강제집행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 :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 제기하거나 제기 태세 보이는 경우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만을 의미 (임의경매 X)
* 객체 :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 민집법상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장래의 권리라도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면 재산에 해당
* 은닉 : 재산의 발견을 불능. 곤란케 하는 것. 재산의 소재 또는 소유관계를 불명하는 것.
* 허위양도 : 양도의 진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것
* 허위의 채무부담 :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
* 기수 : 채권자 해할 위험성 있으면 족하고, 해하는 결과 및 이익취득 불요(추상적 위험범). 채권양도 통지 행해졌을 때

**강요**

* 강요 :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 방해∙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 협박 : 의사결정, 실행의 자유를 제한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
* 의무 : 법률상 의무를 말함
* 기수 : 권리행사가 현실저긍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 현실적으로 했을 때 기수

**<절도와 강도의 죄>**

* 재물 : 유체물, 관리가능한 동력, 관리란 물리적 관리

cf. 정보 - 유체물 아니고, 물질성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아님.

* 재물의 가치 : 객관적 금전적 교환가치 불요, 소유.점유자의 주관적인 가치로 족함.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 가치 성립 가능.
* 금제품 :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 소지자의 점유 보호 절도죄 객체임
* 점유 : 사실적 관리가능성, 지배의사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 분실물 : 타인의 배타적 지배범위 내 두고 온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
* 점유보조자 : 사실상 지배력 행사하는 경우 보관의 주체
* 사자의 점유 :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
* 불법영득의사 : 관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절도>**

* 절취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 배제하고 + 새로운 점유 취득
* 불법영득의사 : 관리자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 실행의 착수 : 사실상의 지배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개시, 물색한 때
* 기수 :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 하에 둔 때
* 죄수 : 점유침해의 수에 따라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

* 실행의 착수 :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성 내포하는 행위 개시 (출입문 당기기)

**특수절도**

* 손괴 : 물리적으로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  
  실행의 착수 : 야간인 경우 주거침입시 또는 손괴시 / 주간인 경우 물색행위시

**<준강도>**

* 절도의 기회 : 절도 실행 중, 직후, 범의포기 직후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 완료 전 피해자가 추적 중인 경우, 신병확보 불확실한 경우는 절도의 기회임.
* 목적: 재물탈환항거, 채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 있어야함
* 폭행 협박 : 일반적으로 반항 억압, 불가능할 정도.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것은 불요
* 상대방 : 재물 소유점유자 외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제3자도 상대방임.
* 기수 : 강도와 재물탈취-폭행협박 순서에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 위험성 동일한바, 절취행위의 기수 여부로 판단
* 죄수 : 수인에게 동일기회에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의 포괄일죄
* 공범 : 절도 공모자 중 1인이 준강도에 나아간 때 이를 전혀 예기할 수 없었던 공범은 준강도 죄책 없음
* 준특수강도의 판단 : 폭행 협박의 태양에 따라 판단

**<강도>**

* 재산상 이익 취득 : 외견상 재산상 이득 얻을 가능성 있으면 족함. 사법상 유효할 것 불요
* 재산상 이익 취득 기수 : 재산상 이익 취득하면 족함. 피해자의 처분행위 불요
* 죄수 : 피해자(점유)의 수에 따라 수죄 실체적 경합

\*단, 폭행협박이 공통으로 이루어져 법률상 1개 행위로 평가 경우 상경

**강도상해/살인/강간**

* 주체: 준강도 특수강도 등 다 포함. 강도 기수미수 불문
* 강도의 기회 : 실행 중, 직후, 범의포기 직후, 사회통념상 범죄행위 완료 안 한 단계.
* 상해 발생원인 : 강취 수단으로서 한 폭행 아니어도, 강도의 기회에 발생된 것이면 충분함.
* 강취와 상해 사이 다소 시간∙공간적 간격 있어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상해하면 충분.
* 기수 : 상해, 살인, 강간의 기수에 따라 결정. 강도의 기수미수 불문.

\* 상습범 규정 적용 안됨.

* 채무면제 받으려는 강도살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상속인도 없음을 알고 살해한 경우

① 채무의 존재 명백 ② 채권자의 상속인 존재 ③ 상속인이 채권 존재 확인 가능한 상황은 X

* 강도상해 공범 : 강도의 공동정범은 상해를 공모하지 않았어도 다른 공범자의 상해행위에 책임 면할 수 없음.
* 준강도의 공동정범은 상해의 예견가능성 있는 한 강도상해 책임 인정됨.
* 강도살인 공범 :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나 사망에 대한 에견가능성 있었으면 강도치사.

**강도 예비 음모**

* 예비 : 강도죄 범할 목적, 준비에 대한 고의,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않는 준비행위 요함.
* 준비행위 :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 물적인 것에 한하지 않음
* 음모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 +객관적으로 범죄실행 준비행위 명백히 인식 +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 인정
* 예비의 방조 :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제외하고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사기>**

ㅇ기망행위

* 부작위에 의한 기망 :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것 알면서도 고지 안하면 기망
* 고지의무 : 일반거래 경험칙상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고지의무 있음. /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 미칠 수 없는 사유를 고지할 의무 없음
* 허위광고 :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고지하면 기망행위
* 보험계약 체결이 기망 : 보험사고의 우연성 같은 보험의 본질 해할 정도 (이미 발생묵비, 개연성 농후, 임의 조작 의도)
* 법인에 대한 사기 : 착오,인과관계 인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 의사결정, 처분권한자를 기준
* 삼각 사기 : 기망의 상대방은 피해자와 동일인일 것 불요단, *피기망자는 재산 처분 권능, 지위* 있어야

ㅇ처분행위

* 처분행위 : 피해자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행사하지 아니한 것

ㅇ 재산상 이익: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 한하지 않음

* 재산상이익 취득: 이익 취득 법률상 무효라고 해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취득 인정
* 채무의 면제 : 소극적 이익도 포함하나,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면제시키는 처분행위 요함.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재산상이익 : 대상 토지 소유권의 방해 제거하고 소유명의 얻을 수 있는 지위의 재산상이익 취득

ㅇ 기수 : 재물재산상이익 취득 시

ㅇ 재물 교부: 범인의 사실상 지배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ㅇ 편취액 :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ㅇ 소송사기

* 고의 :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 입증으로써 기망한다는 인식 요함
* 처분행위성 :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 효력 요함
* 실행의 착수시기 : 소 제기시(원고) /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피고)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 한 때

cf. 채권압류/전부명령 신청시 피압류채권 존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허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 명령 신청은 법원에 대한 기망 아님. 실행의 착수 아님.

* 기수시기 ; 판결/지급명령확정시

**컴퓨터등사용사기**

* 정보처리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 허위 정보 등으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져 직접적으로 재산처분 결과를 초래해야.
* 재산상 이익 취득 : 사람의 처분행위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 실행의 착수 :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할 때

**<공갈>**

* 폭행: 반항 억압 정도에 이르지 않는, 공포심일으키는 것
* 협박: 의사결정 또는 실행의 자유 제한, 방해할 정도 해악의 고지

**<횡령>**

* 위탁관계 : 법률상 사실상 위탁신임관계. 사무관리, 관습,신의칙에 의해서도 인정됨
*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권 있는지 여부 불문
* 불법원인급여 :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님. 단,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권 있어 급여자 소유
* 횡령 법률행위 효력: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무효이면 횡령 불성립, 사법상 무효이면 횡령 성립 (~행위가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 구성)
* 불법영득의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
* 비자금 : 법인과 아무 관련 없거나,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 조성했다면 조성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의 실현
* 용도 엄격하게 제한 :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 위탁받아 집행하며 그 용도 외 목적으로 자금 사용하는 것은,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어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의 실현으로 횡령 성립
* 죄수 : 위탁관계의 수

**<배임>**

* 타인의 사무 : 본질적 내용이 통상적 계약의 이익대립관계 넘어서 신임관계 하 타인의 재산 보호 관리할 의무인 것
* 기업간 보증 행위 : 이미 채무변제능력 상실하여, 자금대여/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 발생 예상하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 충분히 담보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조치 취하지 않은채 만연히 대여해줬으면 배임행위
* 실행의 착수 : 타인사무처리자가 배임 범의로 임무위배행위 개시하는 때
* 기수 :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부작위범 실행의 착수 (21최판)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 재산상 손해 :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 초래 /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X
* 공동정범 :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할 것 요함

**<배임수재/배임증재>**

**배임수재**

* ①타인 사무처리자가 ②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③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배임증재**

* ①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③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공여하고 ④배임증재의 고의
*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 : 타인과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신임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뿐만 아니라 조리, 관습 등 신의칙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윤리적 신뢰관계, 사실상의 신임관계도 포함한다.
* 임무 : 위탁받은 본래 사무뿐만 아니라 밀접 관계에 있는 사무,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무도 포함
* 부정한 청탁 : 배임행위에 이르지 않아도 사회상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

cf. 수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이어도,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일 수 있음.

* 배임수재 기수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한 때. 본인에게 손해 발생 불요.
* 배임증재 기수 : 현실적으로 공여해야 기수. 의사표시, 약속만으로는 기수 아님

**<장물>**

* 장물 : 타인이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그 자체
* 취득 : 본범으로부터 점유 이전받아, 처분권 획득하는 것 / 인도시 장물이라는 정에 대한 인식 요함.
* 양도 :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후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3자에게 수여
* 운반 :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
* 보관 : 위탁을 받고 장물을 자기 점유 하 두는 것
* 알선 : 장물 취득 등 하려는 당사자들간 중개, 편의 도모
* 알선 기수 : 알선행위 했다면 실제 계약 성립이나 장물의 점유이전 없었어도 기수
* 본범의 실현정도 : 본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함. 책임, 소추조건, 처벌조건 불요
* 고의 : 확정적 인식 불요하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재물손괴>** 특수, 공동 있음 / 미수처벌

* 재물 : 재산적 이용가치, 효용 있는 것
* 문서 :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 표시된 문서
* 손괴 : 물리적 훼손하여 효용 상실, 일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포함
* 은닉 : 소재 불명케 해 발견 곤란불가능하게 함
* 기타 방법 :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 효용을 해한 것 :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공익건조물파괴>**

* 파괴 : 건조물의 중요부분을 손괴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경계침범>**

*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
* 경계 :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왔거나, 종래부터 합의하에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온 것.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 불문
* 경계표 : 토지 경계 표시하기 위해 토지에 설치된 표지.
* 손괴 :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
* 이동 : 원래의 위치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 제거 : 원래 설치된 장소에서 취거하는 것
* 기타 방법 : 손괴.이동.제거에 준하는 방법으로 인식불능케 만드는 일체의 행위
* 기수 : 토지경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식불능케 되었을 때 기수 (미수는 처벌 x)

**<유가증권>**

* 유가증권 : 권리 화체, 표창된 권리행사에 증권소지 요함.

**<공연음란>**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음란한 행위 :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을 유발, 성적 수치심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 반하는 행위

**<공안을 해치는 죄>**

**범죄단체조직**

* 단체 :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 수행의 공동목적 하 구성한 계속적 결합체, 최소한 통솔체계 요함
* 집단 :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 수행의 공동목적 하 구성한 계속적 결합체, 통솔체계 불요,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 조직걱 구조 요함.
* 조직 : 다수인이 의사연락 하 집합체 형성
* 가입: 이미 조직된 단체나 집단에 구성원으로 참가
* 활동 : 범죄단체/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행하는, 범죄단체/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에 기여 / cf. 모임에 참가하라는 지시나 명령 소극적으로 받고 응하는 것, 사적이고 의례적인 모임 개최참석 X

**공무원자격사칭**

* ①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②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
* 직권 행사 :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 행사 요함.

**<폭발물에 관한죄>**

* 폭발물 : 퐆발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으로, 폭발작용의 위력, 파편의 비산등으로 살상, 공안 등에 직접.구체적 위험 초래할 수 있는 강한 파괴력 있는 물건
* 폭발성 물건 : 물건의 성질상 폭발할 수 있는 물건
* 폭발물사용 기수 : 폭발물 폭발시켜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해야함.

**<방화와 실화의 죄>**

**현주건조물등방화(제목 꼭 보고 쓰기)**

* 요건 : ①불을 놓아 ②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③소훼
* 사람 : 범인 이외의 자
* 주거 : 일부분이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현주건조물
* 주거,건조물 : 일상생활 영위위해 점거하는 장소
* 실행의 착수 : 매개물 점화시
* 기수 :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추상적 위험범)
* 죄수 :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 기준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제목 꼭 보고 쓰기)**

* 법리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상경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ex) 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ex2)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 상경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 상경

**일반건조물등방화**

* ①불을 놓아 ②전2조에 기재한 이외(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외)의 건조물 등을 ③소훼 (추상적위험범)
* 일반건조물의: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일 것 요하지는 않으나 사람이 기거침식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함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 ①자기소유에 속하는 ②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③공공의 위험 발생 (구체적위험범)
* 일반물건방화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 \*\* 미수범 처벌 X

**<교통방해의 죄>**

**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
* 육로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적음 무관

<->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일시적 사용승낙 받고, 소유자가 부수적으로 타인 통행 묵인 장소는 X

* 불통 : 장애물을 사용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 교통방해 : 교통을 불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
* 기수 : 교통방해 상태 발생시 (추상적 위험범)
* 공동정범 :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 성립하는 것 아니고, 집회에 가담하여 교통방해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관여정도가 공모공동정범의 죄책 물을 수 있는 정도. / 계속범의 성질 가짐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어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상태 지속시켰으면 일반교통방해 <-> 경찰이 차벽 설치해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에 걸어 나간 것은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음

**<통화에 관한 죄>**

* 위조 : 발행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통화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
* 변조 :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
* 위·변조 정도: 일반인이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외관
* 행사할 목적 : 진정한 통화로 유통하려는 목적 (신용력 증명위해 타인에게 보일목적X)
* 통용하는 지폐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 인정되는 것.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 오인 가능성있는 지폐까지 포함되지 않음

**<유가증권 인지 우표에 관한 죄>**

**유가증권위조 / 유가증권변조**

* ①행사할 목적으로 ②유가증권을 ③위조,변조
* 위조 : ①작성권한 없는 자가 ②타인명의 모용하여 ③유가증권 발행.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도 위조 (214조 2항)
* 변조 : ①권한없는 자가 ②타인명의의 진정한 유가증권을 ③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 위조, 변조의 정도 : ‘외형상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허무인명의거나 유가증권 요건 흠결 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어도 성립
* 유가증권 :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 원본을 말함. 위조한 유가증권의 사본은 행사죄의 객체 아님.
* 위조유가증권임을 아는 자에게 교부 : 피교부자가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시 유통질서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사죄 성립
* 위조의 공범사이 교부행위는 행사아님 : 범죄실현 전단계행위에 불과.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으므로
* 허위유가증권작성 :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에 유가증권에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내용 기재
* 허위사항기재 : 기재권한 있는 자가 기존 유가증권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허위사항 기재

**<문서>**

* 보호법익 :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 문서 : 사람의 관념.의사가 물체에 화체되어 외부적으로 표시된 것. 어느정도 계속성 요함
*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수 있게 하는 외관과 형식
* 생략문서 : 인장이 사람 동일성 표시 외 사항도 증명 표시한다면 생략문서
* 사문서 :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 위조 : 권한없는 자가 행사 목적으로 타인 명의 모용해 문서 작성하거나 진정한 문서의 본질적/중요한 부분 변경해 동일성 해하는 것 / 새로운 증명력 작출
* 변조 : 권한없는 자가 행사 목적으로 진정하기 성립한 타인 명의 문서에 동일성 해하지 않을 정도 변경 가하는 것
* 허위작성 : 작성관한 있는 공무원이 진실에 반하는 기재 하여 공문서 새로 만드는 것
* 위조 간접정범 : 명의인이 내용을 오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날인케 하면 간접정범
* 죄수 : 연명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상경)

**공문서위조**

* 공문서 : 공무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
* 공무원 의제? : 행위주체가 공무원/공무소 아닌 경우,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해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 있어도 공무원/공무소 아님
* 간접정범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서명날인 했다면설령 기망으로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하였다해도 문서 성립 진정해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 불성립.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타인: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
* 대표, 대리관계의 표시 :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면 족함

**공전자기록위작**

* 위작 : 무형위조 포함. 입력권한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 남용하여 허위정보 입력하여 시스템 설치운영자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 생성
*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 : 시스템 설치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 잘못되게 하는 것
* 허위의 정보 : 진실에 반하는 내용. 요구되는 자격 갖추지 못했는데 갖춘 것처럼 정보 입력했어도 그 전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 없으면 허위정보 아님.

**허위진단서 작성**

* 진단서 : 의사 등이 진찰한 결과 알게 된 사람의 건강상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문서의 명칭 불문
* 허위의 기재 : 사실에 관한 것, 판단에 관한 것 불문

**허위공문서작성**

* ①행사할 목적으로 ②작성권한있는 공무원이 ③공문서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 기재
* 주체 :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 (권한없는 자가 공무원명의 허위문서 작성시 공문서위조)/ 문서 보충기재할 권한만 위임받은 자x
* 허위 :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 확인, 증명하는 문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알면서 적합하다 작성시 허위

<-> 고의 법령을 잘못 적용했어도, 법령 적용의 전제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 없으면 허위 아님.

○ 간접정범 성부

* ① 작성권자가 타인이용 : 성립

② 공문서작성 보조자가 작성권자 이용 : 보조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결재를 받은 경우 성립

③ 비공무원이 작성권자 이용 :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두어 규율하고 있고, 본죄 주체는 어디까지나 작성권자이므로 성립 X (단,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①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②공정증서에 ③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
* 공정증서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 증명 효력 있는 증서
* 공정증서원본 성질 : 성질상 허위신고로 부실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조정조서 X)
* 등록증: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그 활동에 상응하는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x

* 불실의 사실 :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 갖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
* 기재된 사항이 ①존재하지 아니하거나 ②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있으면 해당
* 실체관리관계와 일치하는 경우 :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면 불실의 등기아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기준으로 판단.
* 착수 : 허위신고시
* 기수 :공무원이 불실기재시

**사문서부정행사/ 공문서부정행사**

* 객체 :사용권한자, 용도 특정 요함
* 부정행사 : 사용권한 없는 자가 권안 있는 것처럼 본래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행사
* 기수 :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 실제 인식할 것 불요

**사전자기록위작**

* 타인의 전자기록 :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된 전자기록은 임직원에게는 타인의 전자기록
* 위작: 입력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무형위조도 포함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 행사 :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
*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인과(도장)의 경우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의 서명 : 진술자가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바로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므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제3자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피의자 간인이나 경찰관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성풍속에 관한 죄>**

* 공연히 전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 하 현출시키는 것

**공연음란**

* 음란행위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흥분 유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해하는 것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도박**

* 도박 :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8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
* 도박성 :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영향을 받으면 도박
* 보호법익 :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
* (도박장소,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
* 영리의 목적: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도 인정됨
* 기수시기 : 영리목적으로 도박개장시 기수.\(현실적 이익,현실로 도박이 행해질 것 불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원 :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 자

**직무유기**

* ① 공무원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
* 공무원 : 공무원 중 구체적인 직무수행의 의무 있는 자만이 본죄의 추제임
* 직무유기 : 구체적으로 직무 수행할 작위의무 있는데도 이를 버린다는 인식으로 의무 수행 안하는 것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자기 직무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더라도 직무유기 아님.
* 죄수 : 부작위범이므로, 작위범(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위계공집방, 증거인멸) 등에 흡수

**공무상비밀누설**

* 직무상 비밀 :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사항 외, 국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 있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것
* 누설 :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① 공무원이 ② 직권남용하여 ③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사람의 권리행사 방해
* 직권남용 : 공무원의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 직무권한 :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 수반하는 것 불요
* 의무 : 법률상 의무
* 권리행사방해 :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된 경우여야 함.
* 권리 :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음. 법령상 보호할 이익이면 족함 - 범죄수사권은 권리에 해당
* 기수 :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 행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 요함
* 미수처벌 X

**<뇌물>**

* 직무관련성 : ① 권한에 속하는 직무 그 자체 ② 직무와 밀접한 관계 있거나 ③ 사실상 관여하던 사무포함
*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 뇌물 :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포함.
* 뇌물의 취득 :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 법률상 소유권 취득까지 요하지 않음
* 반드시 직접 수수될 필요 없고,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죄의 영득의사 실현되면 족함 (새우젓 선물)

**사전뇌물수수/약속/요구**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춘 자 포함

**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제3자뇌물약속**

*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②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③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
* (의율변경) 공무원의 사자, 대리인, 공무원이 직접 채무를 면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단순수뢰죄
* 부정한 청탁:직무집행 자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및 직무집행 그 자체는 부당하지 않으나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에 관한 대가 교부를 내용으로 한 청탁 포함

**알선뇌물수수/요구/약속**

* ①공무원이(중재인x) ② 그 지위를 이용하여 ③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수수요구약속
* 지위 이용: 직무처리 공무원과 직무상 직·간접의 연관관계로 법률상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 불요
* 알선 : 일정한 사항에 관해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
*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어도 무방하고 현안 존재 불요

**<공무의 방해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

* ①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②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방해
* 직무집행 :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 사경제주체로서의 비권력적 작용 포함
* 직무집행의 현재성 : 직무집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 행하고 있는 때 외에 근무중인 상태 포함
* 직법한 공무집행 :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 방식 갖춘 것. 행정법, 소송법적 부적법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
* 적법성 판단시점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 사후의 순수한 객관적 기준 X
* 광의의 폭행 :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
* 광의의 협박 :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일체의 해악 고지
* 죄수 :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 미수 처벌X

* 직무집행 :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 위계 : 행위자 목적 달성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 발생시켜 이용하는 행위
* 허위 증거 제출 :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 조작 제출하여 충실한 조사/수사/심사하더라도 허위임을 발견 못할 정도 요함.
* 신고 :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는, 신고에 대응한 적극적 행정작용에 나아갈 것 예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받지 않아 불성립.
* 기수 : 그릇된 행위나 처분 하는 등 구체적, 현실적 공무집행 방해 결과 요함. (미수 처벌 x)

**공무상 (봉인/표시) (손상/은닉/무효)**

* ① 공무원이 ②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or 압류 기타 강제처분표시를 ③ 손상 or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④고의
* 객체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
* 압류 기타 강제처분 : 민소법 상 유체동산의 압류처분, 가압류, 가처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이 행하는 같은 성질의 처분 포함.
* 강제처분의 유효성 : 압류 해제되지 않는 한 채무 변제하여도 유효 /cf.강제처분이 완결된 후에는 불성립. 강제처분의 적법성 : 가압류 명령의 집행이 법률상 당연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임
*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 손상 : 직접 유형력을 가하여 물질적으로 파손, 훼손하거나 효용을 감쇄, 멸각하는 것.
* 은닉 :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
* 기타 효용을 해하는 것 : 표시의 효력을 감쇄, 멸각시키는 일체의 행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140조의2)**

* ① 강제집행으로 명도 or 인도된 부동산에 ② 침입 or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 ③ 고의

**공용 (서류/물건/전자기록) (손상/은닉/무효) (141①)**

* 경찰차, 공집방 유의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141②)**

* 경찰서, 공집방 유의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 손상,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 해하는 것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도주**

*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② 도주
* 도주죄 주체 : 불법체포된 자 X (적법한 체포 O)
* 기수 : 즉시범으로서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 이탈한 상태에 이르면 기수
* 수용설비 또는 기구 손괴 / 폭행 협박 / 2인이상 합동시 → 특수도주

**범인은닉 / 범인 도피**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②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
* 은닉 : 도피 이의외 방법으로 범인의 발견 체포를 불가능, 곤란하게 하는 행위

**위증**

*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
* 기수 :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진술을 처로히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

**증거인멸 등**

* 인멸 : 증거가치를 멸실∙감소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은닉 :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케 하는 일체 행위
* 위조 : 새로운 증거의 창조
* 모해목적 : 불리하게 할 목적 요함. 범죄 인지 등으로 수사 개시되어 있을 것 요함.

**<무고>**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 보호법익 :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 일부 허위 사실 : 국가의 심판작용 그르치거나 개인의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 있으면 무고죄
* 기수 : 신고가 도달한 때, 수사개시 공소제기 불요
* 고의 : 신고사실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 확정적 미필적 인식
* 목적 : 형사처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면 족함. 형사처분 받게할 결과발생 희망 불요

**<성범죄>**

**ㅇ 강간**

* 강간 : 항거 불능, 현저곤란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간음
* 착수시기 : 폭행∙협박 개시시, 실제 간음행위 시작 불요

**ㅇ 추행**

* 추행: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유발,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불요
* 기습 추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이 경우 폭행 상대방 의사 억압할 정도 불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힘의 대소강약 불문.

**준강간,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 심신상실 :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상태
* 항거불능 :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 불능,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패싱아웃 :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의식상실)에 빠지는 것. 심신상실임
* 블랙아웃 : 알코올 혈중농도가 올라 뇌의 인코딩 과정에 영향 미쳐 기억 상실, 원칙적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아님. 단, 패싱아웃의 정도가 아니어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형성능력,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항거불능에 해당.
* 실행의 착수 :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 개시한 때
* 불능미수 : 행위 당시 피의자가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발생 위험성 있는 것

**강간치상**

* 강간의 기회 :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발생한 것 포함

**<성폭법>**

* 추행 : 성적 수치심, 혐오감 유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 성적 자유 침해 행위
* 위계 : 간음 목적으로 오인 부지 착오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목적 달성. 위계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 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금전비금전적 대가도 포함
* 위력 : 자유의사 제압 혼란케할 일체의 세력, 폭력협박, 지위 등 유무형 불문.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보호, 감독 받는 사람 : ① 직장 안에서 보호/감독 받는 사람 , ②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 받는 사람 ③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 포함.
* 공종 밀집 장소 :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 행위 당시 현실적 밀집도 무관

**통매음**

* 성적 욕망 : 성행위를 직접 목적,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 줘심리적 만족감 얻고자 하는 욕망 포함
* 도달 : 상대방이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카메라촬영등**

* 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반포 등의 주체 : 촬영물 촬영자와 동일인일 필요 없음
* 기수 :동영상 촬영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 경과되었더라면
* 반포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
* 판매, 임대
* 제공 :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정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
* 배포, 전시 :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행위도 포함
* 상영,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 표현물 등장해 성적 행위하는 내용 표현하는 화상 영상 등
* 제작 :면전에서 촬영행위 하지 않아도, 만드는 것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 하게하거나 구체적 지시 하였다면 제작.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 촬영하게 한 경우도
* 영리의 목적 : 직접적 대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교통사고>**

* 도로 : 일반 교통경찰권 미치는 불특정 다수 통행 가능한 공개된 장소
* 운전 :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고의 요함.
* 교통 :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모두 포함

**폭행 협박**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 협박죄: 일반인이 공포심 생길 정도의 해악의 고지. 실제 공포심 느낀 것 불요
* 공집방: 폭행 : 직간접 유형력의 행사 / 협박 : 객관적으로 공포심 일으킬 정도 해악의 고치
* 강요죄 – 폭행 : 사람에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 / 협박 – 의사결정 자유 제한, 방해할 해악의 고지
* 강간: 항거 불능 현저 곤란
* 강도: 반항 억압, 항거 불능

**[소추조건 등]**

**<이중기소>**

피의자는 ~ 상습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중인바,

그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공소권 없음

공소장 변경으로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사실에 본 건 범죄사실추가 요함.

**<친고죄>**

고소가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 여부는 고소장 기재 죄명 아닌 내용으로 결정.

[2문]

314조 외국거주 – 가능, 상당한 수단 다해도 법정 출석 불가한 경우

314조 소재불명 – 법정 출석 위한 충분한 노력 다하였음에도 법정 출석 불가능한 경우

사본 – 원본 존재, 이를 정확하게 전사, 원본 제출 곤란 사정

사진 – 현재 범행중 혹은 범행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

[체포압수]

사인의 위수증

공익과 사익 이익형량 하여 증거능력 판단.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임의제출은 적법함

적법성 판단 시점

체포자의 입장에서 체포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체포 적법.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는지에 의할 것은 아님

[형총 - 판례입장]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 주의의무 준수했더라면 결과발생 방지됐을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